

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(R-7 유형)

(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:)

(단위: 톤, g, kw, m³, kcal 중 선택)

연월일	① 수탁내용		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		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	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					결재
	위탁 업소명	수탁량	재활용 방법	폐기물 재활용량		폐기물 종류	발생량	처리자	처리 방법	처리량	

연 월 일	⑤ 중간가공폐기물				⑥ 중간가공폐기물의 공급 및 보관 내용									결재
					공급처					공급량	잉여량 또는 감모량	잉여량 또는 감모량 발생 사유	보관량	
	종류	생산량			상호 (대표자)	업종	소재지	사용 용도	최종 재활용 대상부지					
		계	재 활용토사	일반토사(건설 폐재류)										

작성방법

1. 폐기물종류는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2. 단위는 톤, g, kw, m³, kcal 중에서 선택하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고, 수탁량 및 재활용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3.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폐기물을 수탁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잔재폐기물이 발생 또는 처리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4. ①란의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습니다.
5. ②란의 재활용방법란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는 별표 4의2에 따른 방법을,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을 적습니다.
6. ③란의 수탁폐기물 보관량란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.
7. ④란의 잔재폐기물 처리 내용란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, 발생량, 처리자, 처리방법, 처리량을 적습니다.
8. ⑤란의 중간가공폐기물란 종류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(성토재, 복토재 등)을 구체적으로 적으며,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토사(재활용 대상 폐기물)와 일반토사(건설폐재류)의 투입량을 각각 적습니다.
9. ⑥란의 공급처란의 업종은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적고,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처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.
10. ⑥란의 최종 재활용 대상부지에는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한 자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고,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재활용할 대상 부지를 적습니다.
11. ⑥란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재활용제품의 특성, 보관 및 운송과정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대장의 보관량과 현장의 보관량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습니다.